

방송통신위원회 속기록

회의명 : 제24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회의일시 : 2023. 7. 12.(수) 10:00

장소 : 방송통신위원회 4층 회의실

참석위원 : 김효재 부위원장
김 현 상임위원
이상인 상임위원 (3인)

불참위원 : 없 음

제24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속기록

【 10시 00분 개회 】

1. 성원보고

-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
 - 성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좌미애 의안·정책관리팀장
 - 재적위원 세 분이 참석하셔서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2. 국기에 대한 경례

- 좌미애 의안·정책관리팀장
 -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서 전면의 국기를 향해 주십시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3. 개회선언

-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
 - 2023년도 제24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4. 전차 회의록 확인

-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
 - 2023년도 제23차 회의록과 속기록을 확인하고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출된 회의록과 속기록에 이의 없으십니까?
- 김 현 상임위원
 - 속기록 접수하면서 발언을 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

- 예, 말씀하십시오.

○ 김 현 상임위원

- 지난 7월 5일 10시에 위원회는 그동안 제가 끊임없이 문제제기했던 방통위의 5인 위원회 체제가 아닌 상태에서 사회적·정치적 중요한 의사결정에 있어서 하자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고, 그 결정은 이후 5인이 다 완성됐을 때 해야 된다는 지적을 무시당하고 그 중요한 텔레비전 수신료에 대한 분리징수를 의결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국무회의에서 최종 의결을 했는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당시에 제가 퇴장하고 난 뒤에 두 분께서 한국방송공사에 대한 다양한 문제제기가 있었고 그 이후 방송통신위원회 사무처에서 보도자료를 세 번 냈습니다. 물론 위원장님의 재가가 있었던 것으로 충분히 파악이 됩니다. 그 보도자료의 상당히 왜곡된 내용으로 인해 국민들에게 혼선과 언론보도의 왜곡이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위원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사 이것이 어떤 정치적인 의미가 있는 일이라 하더라도 적어도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리고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위원회를 운영해야 함이 방통위 설치법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7월 5일 방통위 사무처에서 낸 자료와 7월 6일 보도자료와 참고자료, 11일 보도자료가 나갔습니다. 거기에서 가장 결정적인 왜곡과 가짜뉴스는 수신료를 내지 않아도 단전의 우려가 없다는 내용의 보도자료입니다. 한국 전력공사가 통합해서 징수하는 것이지 수신료를 내지 않았다고 단전의 우려가 있었다는 헤드라인으로 보도자료를 낸 것이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전혀 사실관계에 부합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새 제도로 TV가 없는 집은 수신료를 안 낼 권리를 강화했다' 이미 TV가 없으면 수신료를 내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편익 증진을 기대한다는 내용으로 보도 자료가 나갑니까? 그리고 10월경에 완전분리가 되고 과도기에는 한전 고객센터 등을 통해 분리 납부를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공포 후 유예기간을 두어야 한다는 한국전력공사와 한국 방송공사의 요구를 깡그리 무시하고 '공포 후 즉시 시행'이라는 입장문입니다. 지금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치 지금이라도 안 낼 수 있다, 또는 완전 분리가 이번 달부터 시행될 수 있다 것은 언어도단입니다. 자극적이고 사실관계에 부합되지 않은 자료가 나감으로 인해서 무수한 언론이 왜곡보도의 대열에 동참하고 있고, 또 한국방송 공사에서 이미 위원장 직무대행의 지난 회의 때 발언에 하자가 있다는 것을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어제 국무총리께서 똑같이 KBS는 무보칙이 많고 방만경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무처에서 자료를 낼 때 사실에 부합하지 않고 객관적이고 공정한 자료를 내지 않음으로 인해서 왜곡되고 가짜뉴스와 편파보도를 양산하는, 결국은 방통위 사무처로 인해서 그런 일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또 하나는 어제 낸 자료 중에 결정적으로 자꾸 이런 특히 <6>번 "6월분 전기요금고지서를 이미 받았는데 12일 이후 수신료 분리납부를 신청해서 전기요금과 수신료를 따로 낼 수 있나요?" 그럴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이미 인쇄를 했기 때문에 6월 전기료 납부는 그대로 고지해야 하고 7월도 마찬가지로 오늘이 12일이기 때문에 분리해서 낸다고 하더라도 8월도 같이 통합 고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10월까지 진행된다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이런 하나마나한 소리로 국민들을 현혹시키지 말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외국에서는 수신료를 어떻게 징수 하나요?" 이 질문에 영국, 독일, 일본 예를 들어 단독징수하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영국, 독일, 일본은 애당초 단독징수를 했습니다. 분리징수하다가 통합징수하거나 통합징수하다가 분리

정수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독일의 경우는 별도의 회사를 운영해서 요금을 내고 있고, 영국의 경우는 한 달에 한 번 내지 두 달에 한 번이 아니라 1년에 한 번 내고 있습니다. 딱 한 나라, 일본만 단독정수를 하고 있는데 현재 단독정수로 인하여 낭비요인이 많다는 것이 지적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유럽에서는 50개 국가가 전력공사를 통해 통합정수, 우체국, 자체정수, 자체 별도회사, 외부대행사, 정부 여기에 보면 유독 자체정수하고 있는 나라가 3개의 나라이고, 전력회사 위탁정수는 12개 나라로 5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자료를 근거하지 않고 왜곡해서 또는 선별해서 보이고 싶은 것만 내는 자료는 더 이상 위원장 직무대행께서 잘 검토해서 객관적이고 공정한 자료가 나갈 수 있도록 위원회를 대표하는 위원장으로서의 권한 행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

- 입장이신 것 같고, 그러면 회의록은 원안대로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록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김 현 상임위원

- 예.

○ 이상인 상임위원

- 이의 없습니다.

○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

- 그럼 동의하신 대로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5. 회의공개 여부 결정

○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

- 오늘 회의에는 <의결안건> 2건이 상정되었습니다. 이 중에서 <의결안건 가> '한국방송공사 이사 해임 건의에 관한 건'은 인사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회 회의운영에 관한 규칙 제9조 제1항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하고, 나머지 <의결안건> 1건은 공개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회의 운영의 효율성을 위해 비공개 안건인 <의결안건 가>를 마지막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6. 의결사항

나. 「방송법」 제100조 제3항 과징금 처분 재심 청구에 관한 건 (2023-24-077)

○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

- <의결안건 나> “ 「방송법」 제100조 제3항 과징금 처분 재심 청구에 관한 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진희 방송기반총괄과장

- 「방송법」 제100조 제3항 과징금 처분 재심 청구에 관한 건 보고드리겠습니다. 의결주문입니다. '㈜머니투데이방송이 원처분 과징금액(3,000만 원)에 대하여 감경을 요청하며 제기한 재심 청구에 대하여 시청자 피해확대 방지 및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노력을 고려하여 원처분 과징금액을 20% 감경하여 2,400만 원으로 변경한다'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방송법」 제100조 제7항, 「방송심의 관련 업무처리 지침」 제6조(재심청구 등)·제9조(재심의 방식)·제10조(재심결정)에 따라, (주)머니투데이방송의 재심 청구를 심의·의결하기 위함입니다. 다음 경과사항입니다. '23년 1월 31일 (주)머니투데이방송을 포함하여 대상사업자에게 과징금 처분 사전통지를 시행하였습니다. 3월 21일 대상사업자에게 과징금 처분 위원회 의결을 하고, (주)머니투데이방송에 대해 3,000 만 원의 과징금 부과통지를 하였습니다. 지난 4월 14일 (주)머니투데이방송은 과징금 처분 집행정지를 신청하고 재심을 청구하였습니다. 집행정지 신청은 거부 통지하였으며, (주)머니투데이방송은 과징금 3,000만 원을 납부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심 결정 내용입니다. (주)머니투데이방송은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7조(품위유지) 제5호를 위반하였고, <이반장의 주식민원 처리반>은 관계자 징계를 처분받았으며, 1년 이내 3회 동일 심의규정을 반복위반하여 관계자 징계를 받았습니다. (주)머니투데이방송은 3건의 위반행위에 대해 관계자 징계조치를 받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위반행위의 정도가 경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감경 없이 기준금액인 3,000만 원을 과징금으로 부과하였습니다. 다음 재심 청구취지 및 이유입니다. 청구인은 원심결정에 따른 과징금액의 감경을 요청하였습니다. 청구이유는 청구인은 피해확대 방지 및 재발방지 노력을 하였으며, 청구인의 사업규모가 타사업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영세하다는 사실, 타사업자에 비해서 위반행위가 더 중하지 않다는 점을 고려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위반행위 시정을 위하여 시청자 사과방송을 실시하였고, 위반 프로그램의 다시보기 및 유튜브 영상을 삭제하였으며 위반행위 재발방지를 위하여 담당PD와 출연자 대상 특별교육을 실시하였고, 담당PD와 출연자에 대한 제재조치를 하였다고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방통위로부터 과징금 처분을 받은 4개 사업자 중 3번째로 낮은 매출과 이익을 기록하고 있는 청구인은 기준금액에서 50% 감경을 받은 타사업자에 비해 가혹한 처분을 받은 것이라고 언급하였습니다. 또한 위반행위의 횟수가 3회 위반으로 타사업자와 동일하므로 청구인이 더 무거운 제재를 받을 이유가 없고 타사업자도 '관계자 징계' 조치를 받은 바 있으므로 청구인의 위반행위가 더 중하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다음 재심 결정사항입니다. 요건 판단은 「방송심의 관련 업무처리 지침」 제6조 제1항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서 충족하였습니다. 다음 재심 결정사항입니다. 근거규정은 「방송법 시행령」 제70조 관련 [별표5]너목에 따라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금액은 3,000만 원이며, 사업규모·위반행위의 정도·횟수 등을 고려, 50% 범위 안에서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습니다. 또한 참고할 규정으로는 「방송법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별표3] 'Ⅲ.감경사유 및 비율' 제6호는 위반행위 재발방지 조치에 따른 과징금 감경한도를 30%로

규정하고 있는 점을 참고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재심처분 방안입니다. 일부인용으로 20%를 감경하고 과징금액을 2,400만 원으로 변경하는 안입니다. 사업규모의 상대적인 영세성과 위반행위 정도 등 청구인의 주장과 관련하여 우선 사업규모 면에서 4개 사업자가 같은 날 같은 법령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것은 우연한 사정일 뿐이기 때문에 고려사항이 될 수 없습니다. 또한 167개 PP 사업자 전체를 비교하였을 때 청구인은 '21년 회계기준 청구인의 총자산 345억 원으로 167개 PP 사업자 중 41위에 해당하고, 매출액으로서는 34위, 순이익 면에서는 23위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의 사업규모가 영세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또한 청구인은 3회 위반에 대하여 '관계자 징계' 조치를 받았기 때문에 위반행위의 정도가 경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심결정을 변경할 특별한 사유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청구인은 위반프로그램의 심의 제재처분 의결일 이전에 사과방송을 송출하고 시청자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였고 자진해서 홈페이지 다시보기와 유튜브 영상을 삭제하였다는 점에서 시청자 피해확대 방지 및 위반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시정 노력이 있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책임PD 및 출연자에 대한 특별교육을 자발적으로 실시하였다는 점에서 위반행위의 재발방지 노력을 인정할 수 있겠습니다. 이에 따라 원처분 과징금액(3,000만 원)의 20%를 감경하여 2,400만 원으로 부과하였으면 합니다. 다음 향후 조치계획입니다. 오늘 의결해 주시면 7월 중으로 재심 결과를 해당 사업자에게 통지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

-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김 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김 현 상임위원

- 사무처 원안에 동의합니다.

○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

- 이상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이상인 상임위원

- 사무처 의견처럼 피심인이 사과방송을 하고 다시보기를 삭제한 점, 그리고 자체적으로 관련자 교육을 실시한 점 등은 감경사유 중 하나인 위반행위의 재방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적정한 감경사유의 적용은 위반행위에 대한 조속한 시정과 일방에 기여해서 규제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피심인의 재심 청구에 대해서 감경사유를 적용한 사무처안은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사무처 원안에 동의합니다.

○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

-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이 사업자가 이 이후에 똑같은 위반행위는 하지 않았습니까?

○ 박진희 방송기반총괄과장

- 제가 확인했는데 '20년 이후로 현재까지 동일한 사유로 심의규정 제재를 받은 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

- 저희들 제재 나가고 나서 똑같은 사항으로 다시 위반해서 우리에게 올라와 있는 건이 없다는 것이지요?

○ 박진희 방송기반총괄과장

- 예.

○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

-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습니다.

○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

- 다음은 비공개 안건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0시 17분 】

가. 한국방송공사 이사 해임 건의에 관한 건 (2023-24-076) (비공개)

(의사봉 3타)

【 12시 07분 】

7. 기 타

○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

- 오늘 상정된 안건 처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른 논의사항 있으십니까?

○ 김 현 상임위원

- 있습니다. 최근 TBS가 지난번에 조례 폐지 이후 경영혁신안을 내면 정상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TBS 예산을 정상화시키는 것이 지금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 언론보도에 나왔습니다. 방통위 사무처는 2024년까지 TBS 허가증을 내준 행정청으로서 TBS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제대로 현장상황을 파악해서 보고할 수 있도록 위원장 직무대행께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최근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KBS2를 폐지시켜야 한다는 발언을 한 바 있습니다. KBS2는 한국방송공사법에 근거해서 허가를 내준 방송사업자임에도 불구하고 정치인이 폐지를 운운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과연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발언했던 KBS2를 폐지할 수 있는지 법상 가능한 지에 대해 검토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인 상임위원

-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

- 그러면 차기 회의는 추후 공지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8. 폐 회

○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

- 이상으로 2023년도 제24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12시 08분 폐회 】